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이 제2항의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소프트웨어(제한수신 기능통합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포함) 또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동작하며, 디지털유선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1. 가입자 단말이 디지털유선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와 접속하는 경우 적합한 가입자 단말인지 확인하는 인증과정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2. 가입자 단말은 디지털유선방송 제공사업자 설비에서 제한수신을 위해 발생시키는 키(이하 “제한 수신 키”라 한다)를 안전하게 수신하여야 한다.

3. 가입자 단말은 제한수신된 영상을 수신하고 제한수신 키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제2항을 만족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TTAK.KO-07.0020)」 표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35조 중 “고시 제23조 및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9조에 의한 대역외 상향채널 관련 규정과”를 “고시”로, “의한 단말장치와 제한수신모듈의 분리 또는 교환의무”를 “의한”으로 한다.

제36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③ ~ ⑤ (생 략)

제35조(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한 적용특례) 디지털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임대하는 가입자 단말장치 중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해서는 이 고시 제23조 및 「방송 공동수신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9조에 의한 대역외 상향채널 관련 규정과 제19조 제1항에 의한 단말장치와 제한수신모듈의 분리 또는 교환의무 규정을 적

수신을 위해 발생시키는 키 (이하 “제한 수신 키”라 한다) 를 안전하게 수신하여야 한다.

3. 가입자 단말은 제한수신된 영상을 수신하고 제한수신 키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제2항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TTAK.KO-07.0020)」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35조(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한 적용특례) -----  
-----  
-----  
이 고시 제19조 제1항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  
-----  
-----  
----- 2023년 1월 1일 -----  
-----  
-----  
-----.